

1. 개정이유

법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종류를 취업장려금과 새출발장려금으로 정하고 그 사유를 명확히 하며 거주지보호기간 내에 취업한 경우, 그 기간의 도과 후에도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함. 교육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서 모든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반영함.

2. 주요내용

- 가. 취업장려금, 새출발장려금 명칭 추가 및 지급 근거 명확화(안 제6조의2 제1항)
- 나. 거주지보호기간(5년) 내 취업을 한 경우, 거주지보호기간이 도과한 뒤 일정기간(1년) 취업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6조의2 제3항)
- 다. 교육지원 대상이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북한이탈주민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안 제8조의 2제1항, 제7항)
- 라.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6호의3, 제9호, 제10호, 제1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및 그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취업장려금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을 “동일한 업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에 해당하는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새출발장려금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일한 업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

협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에 해당하는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를 “보호대상자”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을 “취업장려금을 지급받을 있는 기간을 연장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을 “연장”으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를 “1년씩으로 한다”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해당 취업기간 중 최초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의 취업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 중 “영 제46조제4항”을 “영 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를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을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46조제4항”을 “영 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 제46조 제3항”을 “영 제46조제3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호대상자”를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로,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를 “영 제45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려금의 지급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 제1항 제2호의 새출발장려금은 2005년 5월 1일 이후 거주지로 전출하여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그 사유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제6조의2(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 영 제39조제7항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영 제39조제7항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 및 그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1. 취업장려금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동일한 업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에 해당하는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2. 새출발장려금 :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출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거주지 보호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출산횟수 별로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일한 업체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2호 본문의 사업에 해당하는 동일한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

② 보호대상자-----

----- 취업장
려금을 지급받을 있는 기간을
연장할 --. 연장 -----

-----1년
씩으로 한다.

③ 취업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해당 취업기간 중 최초 거주지 보호기간(5년)이 종료된 경우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의 취업유지 기간에 대해서는 취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보호대상자는 거주지 보호기간이 지난 후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통일부장관이 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보호대상자는 그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생략)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통일부장관은 영 제46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이거나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영점인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

④ 새출발장려금은 취업장려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은 보호대상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 기준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8조(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않는 경우) ----- 영 제46조 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

제8조의2(교육지원의 절차) ① -

---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

만, 제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1. (생략)

2.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 또는 진학 예정자 등만 해당한다) 사본 1부

② 삭제

③·④ (생략)

⑤ 영 제46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등의 보조는 사업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나 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 후 재단 이사장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

-----.

1. (현행과 같음)

2. -----

-----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 -----
--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영 제46조제4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1. ~ 4. (생략) ⑥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립·공립인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지원대상자의 등록금 면제현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재단 이사장은 <u>보호대상자</u>의 교육지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u>교육기관의 담당자</u>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⑥ ----- ----- ----- 영 제46조제3항(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 -----. ⑦ ----- <u>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u>----- ----- 영 제4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u>교육기관</u> ----- ----- -----.
---	--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취업장려금 □ 새출발장려금)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① 성명		② 하나원 기수		③ 생년월일
	④ 주소				
	⑤ 전화번호				
장려금 지급사유	종류	구체적 사유			
	⑥ 취업	취업기간			
		업종			
	가입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밖의 사항	⑦ 이미 수령한 장려금	[] 해당 없음 [] 취업(회) [] 새출발(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8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장려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인 통장 사본 2. 신청인 신분증 사본 3. 재직증명서 4.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 신고내역(조회 화면) 5. 신청인의 취업기간 급여내역이 명시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주민등록표 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항목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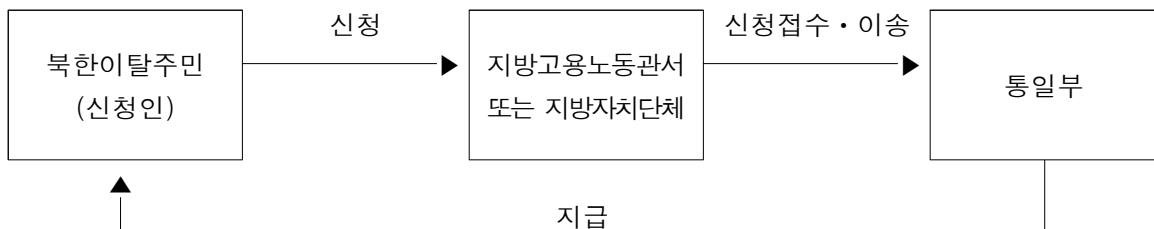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①, ②, ③, ④, ⑤란은 신청인 본인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 ⑥란은 장려금 지급 사유 등을 적습니다.
- ⑦란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장려금 수령 여부 및 수령 횟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교육지원 신청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 북한 이탈 주민	성명	생년월일			
		입국일	전화번호			
		주소				
	②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유의사항 : 교육지원 신청인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경우, ①,②번 모두 작성합니다.

③ 교육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보호자)과 관계		[] 본인	[] 자녀
	학교구분*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학교		학과(8자 이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에 관한 증명 서류(대학 등에 재학하고 있거나 진학 예정인 북한이탈주민만 해당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직원 확인사항	본인정보 제공요구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본인정보 제공요구 및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위의 본인정보 제공요구 항목의 정보 제공을 요구하며,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정보요구 대상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정보요구 대상기관 : 법원행정처)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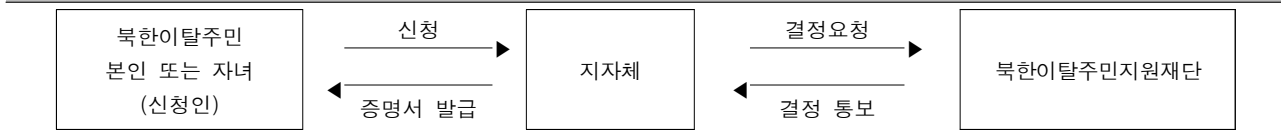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본인이 위 사항에 대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 및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 교육지원 대상자가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①,③란을 작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자녀(제3국 및 국내출생)인 경우 ①,②,③란을 모두 작성합니다.
- *란은 교육지원 대상자가 취학해 지원받으려는 교육기관을 선택합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교육 지원 대상자	성명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 본인 [] 자녀
	전화번호	생년월일	
	학교구분	[] 초·중·고등학교 [] 대학교	
	주소		
지원내용(대학교)			

위 사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직인

교육지원 보조금 지급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① 학교명	② 소재지 (시·도/ 시·군·구)			
③ 대표자 성명	④ 취학자		등	명
보조사업의 목적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학비 지원			
보조사업의 내용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			
⑤ 보조사업 소요경비	소요경비 총액	지급받으려는 보조액	자기자본의 부담액	
⑥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지원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대학교 총(학)장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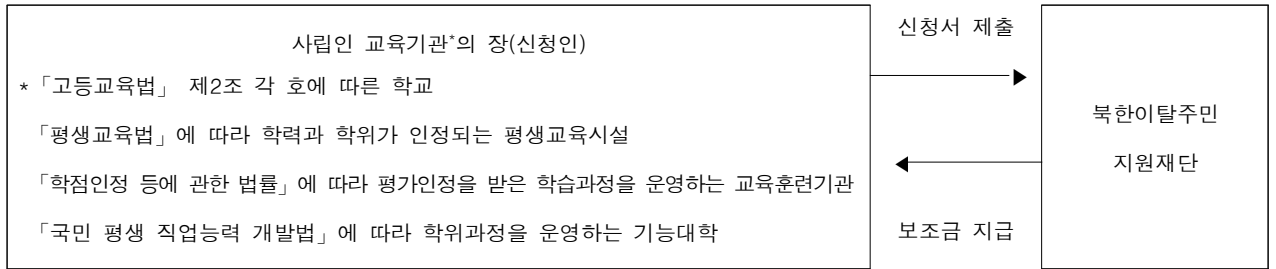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통지서·성적통지서 등 증명서류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①, ②, ③, ④란은 교육지원 보조금을 신청하는 학교의 해당 내용을 적습니다.
2. ⑤란은 소요경비 관련 내용, ⑥란은 교육지원 보조금을 입금 받을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